

2023회 계 연 도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소 관 결 산
예 비 심 사 보 고

▣ 보 건 복 지 부	소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관
▣ 질 병 관 리 청	소 관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2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IV. 대체토론 요지	26
V. 소위원회 심사보고	28
VI. 심사결과	30
VII. 부대의견	31
※ 불임: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32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3. 8. 26.

보건복지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보건복지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연금기금
- 응급의료기금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 질병관리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응급의료기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4. 5. 31.

2. 회부일자: 2024. 6. 1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회부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1.)

상정, 소위원회 심사, 소위의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대체토론, 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검토보고서 I 권 89쪽) ‘의료 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다수 법률에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7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이에 연계된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들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권 36쪽) 다음은 ‘과다한 여유 재원 편성 후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동 사업에 9조 983억원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360억 5,2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였고, 7,000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및 기타 의료 이용률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3,383억원의 미지급금 지원비를 전액 불용되었는바, 2022년도의 대규모 예산 이·전용이 2023년도의 미지급금 지원비 편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권 108쪽) 다음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및 계약 해지 이후 조속한 개통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주요 복지업무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관련 법률·제도·지침 등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액 108억 8,500만원 중 97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과업으로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개별시스템 통합 등 3차 개통과 통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4차 개통이 남아있는데,

사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는 초기와 같은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관련 후속 조치 등 남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 권 145쪽)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사무소 정원 미달 시정 및 현지 우수인력 채용 여건 마련 필요’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위탁운용수수료율이 1.3%로 높고, 위탁수수료 지출만 한 해 1조 8,137억원에 달하고 있어 해외 직접 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 해외사무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20% 이상 부족하고, 런던사무소의 경우 현지 채용 인력이 공석인바 2020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의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례적인 해외사무소 인력의 정원 미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권 184쪽) 다음으로,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68억 7,500만원 중 120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내역사업 중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본예산 기준 212억 5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실집행된 금액은 17억 4,200만원으로, 전체 실집행률은 8.7%에 불과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대상자를 적절히 설정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권 210쪽)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37억 4,500만원 중 39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보호종료아동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감소하여 2023년 말 기준 누계 9,970명임에도 지급대상을 12,000명으로 확대 추계하여, 지급률이 2022년 91.4%에서 2023년 82.8%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감소 추이를 지급 대상자 산출에 반영하고, 보호연장아동 발생 현황에 기초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Ⅱ권 320쪽)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및 공익활동형 일자리 지급단가 인상 필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 소득 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5,363억 1,600만원 중 1조 5,362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 등을 위해 37억원이 전용된바,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대기수요(2023년도 11만명)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의 공익활동 일자리 보수단가는 9,667원으로,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바, 빈곤 노인의 소득보전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단가 인상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II권 426쪽) 다음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필요’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달체계상 핵심인력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은 8.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돌봄인력과 비교하여 낮은 급여 수준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바,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급여 수준을 유사 돌봄인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22쪽) 다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
를 위한 대책 필요’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 8월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중소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6억 9,600만원 중 4억 6,200만원(66.4%)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당초 설치의무 유예기간 만료일이었던 2022년 8월 31일에 시행령 부칙을 개정·시행하여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4년 4개월 연장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 다수가 중도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의 실행율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자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급 설치 유예기한인 2026년 말까지 설치를 계속하여 지연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집행을 제고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64쪽) 다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제공 서비스의 효과와 질 제고 및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기능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국립암센터와 13곳의 지역암센터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적고 단기계약직이며, 전담인력별 담당 인원수가 최대 6.6배까지 차이나는 등 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효과성 저하 우려가 있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101쪽) 다음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 사업은 한약재 품질검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5개 지역(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에 설치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0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운영 시작 이후 운영 중단 및 이용률(시설 전체 면적 대비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시설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시설이용률이 2020년 16.5%, 2021년 23.9%, 2022년 37.7%로 상승하는 등 이용률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2023년 현재 평균 이용률이 46%에 그쳐 적정이용률인 60%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고, 특히 화순(21.1%) 등 지역의 이용률이 낮은 등 지역별 시설이용률에 차이가 커 향후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192쪽) 다음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의 원만한 추진’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은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과병원·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68억 8,700만원 중 6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실집행액은 50억 3,600만원, 73.1%에 그친바,

그 주된 사유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권역센터 설치비 및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사업 중 ‘세종권역센터’ 설치 사업이 장애인 환자의 이용 편의 및 진료 효율 향상을 위해 설계 및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2023년도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00쪽) 다음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충원 및 전문성 제고 필요’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사업은 자살 예방 관련 정보제공, 안내뿐 아니라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위기신호 조기 발굴과 자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첫째, 자살예방 상담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퇴직률이 매년 20% 내외로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왔고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 미달로 어려움을 겪어 온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상담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해당 직무가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을 고려할 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11쪽) 다음은 ‘연구중심병원 계속 육성을 위한 2기 사업 예산 신속 확보 필요’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은 진료영역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68억 1,300만원 중 집행잔액 50만원을 제외한 468억 1,250만원이 10개 연구중심병원에 속한 26개 연구유닛에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연구중심병원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이전에 모두 선정되어 2023년 이후로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제2기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예산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34쪽) 다음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부적절’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화장품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54억 7,700만원인데, 7억 6,400만원이 전용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62억 4,100만원이고, 이 중 162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2호점을 신규 개관하기 위해 2개 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7억 6,400만원을 전용증액하였는데,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서 예산에 미반영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52쪽) 다음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 확산 필요’입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관리·운영 사업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정하고, 인증받은 시스템의 운영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20억 8,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사업 전환 후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사용인증 비율은 약 9.4%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사용인증 비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66쪽) 다음은 ‘연례적 공과금 예산 과소 편성 및 과다 이·전용 시정 필요’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인력 및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총 67억 5,5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하고, 그 부족분을 과다한 이·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자 국내 유일의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을 갖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공과금을 적절히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다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Ⅲ권 378쪽) 다음은 ‘긴급치료병상 확충 내역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 개선 필요’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위기 시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준중증환자,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가 입원·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573억 원 중 2,572억 1,000만 원을 교부하여 19.7%인 50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설계 용역·심의, 착공, 공사 완료, 장비 구입 승인 등 완공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말 현재 국고보조금을 미교부 받은 4개 기관은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참여 자체를 재검토 중에 있는 등 사업대상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수행기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IV권 46쪽)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위생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2023년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10개의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및 회계관리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에 교육기관의 자격 요건 등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식품위생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IV권 112쪽) 다음, ‘세목조정 필요시 절차 준수 및 비목에 맞는 보조금 집행 필요’입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백신의 품질확보와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백신센터와 교육시설, 셀뱅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센터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 관제시설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공사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해야 함에도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세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 센터는 식약처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련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V 권 75쪽) 이어서,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치료제 გადა이전용 주의 및 치료제 수급관리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치료제구입비’ 사업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188억 7,100만원 중 8,18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3,843억원을 초과하는 4,004억 3,7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과도한 이·전용으로 여타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 발생도 주요 원인인 만큼, 신속 대응을 위한 이·전용은 최소화하면서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폐기량을 보면 2023년의 경우 팩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각각 2천명분이 폐기되었고, 2024년(5월말)에도 각각 2천명분, 1천명분이 폐기된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치밀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V 권 82쪽) 다음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추진의 정상화 노력 필요’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신종감염병, 재유행감염병 등에 의한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7억 2,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호남·충청·경북·경남 및 수도권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호남권은 공모 후 착공을 시작한 단계이며, 충청권·경북권은 병원 자체 계획 재검토 중, 경남권은 KDI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5년에서 6년 정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2017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보고서 V권 165쪽)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국가 건강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8억 6,900만원 중 57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은 매년 대상자의 30% 정도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매년 그 다음해 11월경 발표되어 조사 시점과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상당한 시간적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바, 온라인 방식의 조사방법 적극 활용 등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조사결과의 발표도 앞당겨서 당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IV. 대체토론 요지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조금 신청 시스템 개선 등 고령자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바, 상병수당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본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엘리엇·메이슨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
- 의료급여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바, 부양의무자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압류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으므로,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인증 비율이 저조한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산시킬 적절한 유인책을 설계·제도화할 것

-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연말에 과다하게 편중되고 있는바, 국고지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교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국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및 치료제가 폐기되거나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35건, 제도개선 159건 등, 중복 5건을 제외한 총 189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무단 전용이 재발되지 않을 것,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이나 회계와 기금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것,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용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2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수행 시 집행가능성과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과도한 이·전용 및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2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예산 편성 추이와 집행관리에 대하여 지속 점검하고, 신규 설립된 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적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류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VI. 심사결과

1. 보건복지부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35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10건
- 제도개선 126건
- 중복 1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2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4건
- 제도개선 19건
- 중복 1건

3. 질병관리청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32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21건
- 제도개선 14건
- 중복 3건

VII.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 1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건, 질병관리청 3건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 189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	10	126	1	135
식품의약품안전처	-	-	-	4	19	1	22
질병관리청	-	-	-	21	14	3	32
합계	-	-	-	35	159	5	189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의료 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현재 7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종합계획(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인 수급계획(의료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이에 연계된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들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미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그와 연계된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며, 관련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적정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장애인의무고용 의무 위반 공공기관 시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지적사항	○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하였는데, 4개 기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위반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요인이 됨.		
		시정요구사항	○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소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국민건강증진기 금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운용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7,000억원으로, 누적 예수금은 4조 5,32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885억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6-596),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연례적으로 60~70% 수준으로 저조함 -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 보관에 따른 이자는 기타재산 이자수입 비목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됨에도, 2020년 이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결정을 실시한 사업 중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5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 지원예산의 결산상 잉여금 규모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수입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지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이 결국 당해연도 예산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귀결되어 이 잉여금이 차년도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2023년도에는 2022년으로부터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의 규모가 출연사업비의 52.2%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향후 전년도 이월액과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의료급여 사업의 불용액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7.7% 수준인 7,000억 3,800만원으로, 이·전용 등 감액 360억 4,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대비 집행되지 않는 금액은 8.1% 규모에 달함 ○ 급여 대상자를 기초 1종 116만 4,000명, 기초 2종 39만명, 타법 1·2종 8만 3,000명으로 추계하였지만,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기초 1종 108만 8,000명, 기초 2종 35만 3,000명, 타법 1·2종 8만 2,000명으로, 편성 인원 대비 실집행 인원이 적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과다추계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7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음 - 시·도가 단순히 국고지원액과 지자체 매칭액을 한꺼번에 건보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보공단에 이를 위탁·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는 문제가 있음 - 기금의 재원 자체가 보조금이고, 기금 운용의 취지가 급여비용 재원의 충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기금의 과도한 적립과 미지급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금의 누적적립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예산편성의 잦은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미교부된 예산(총 7,360억 5,200만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3,616억 700만원, 49%)이고, 그 다음으로 미지급 지원비(3,383억 9,300만원, 46%)임 ○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미지급금 지원 예산은 2022년 2,392억원의 예산 이·전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손실액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2022년 대규모 예산 이·전용이 2023년도의 미지급금 지원비 편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2023회계연도의 대규모 예산의 불용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왔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잦은 이·전용으로 인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불필요한 절차를 지양할 것		
9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재산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수급권자의 수에는 변화 폭이 없이 150만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확대시킬, 명백한 의료급여 제도 개악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의료급여 불용액 정신병원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이 경영난으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병원 의료급여 예산을 1,438억원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선집행한 후,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의 선집행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11	면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활근로 사업은 예산 확정 시 인상한 단가를 연도 중인 3월에 바로 조정하면서 전용(증)하였는데,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3년 3월 자활근로사업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예산 확정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단가를 인상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내역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추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신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1137-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실 가입인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자체 실집행실적 또한 교부 예산액 2,269억 600만원 중 1,954억 6,800만원만이 실집행(86.2%)되어 높지 않음 ○ 국비와 지자체의 매칭액을 예탁금으로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개발원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반납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산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지 않고 2025년부터 연 소득 1.3억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입장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적기 처리율 제고 및 인력 확보 등 통한 평가자 안전 확보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사업(1137-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1인 출장 평가의 한계가 우려됨 - 2023년 적기 처리율이 높아졌으나, 이는 2인 1조로 구성된 출장 평가건수의 증가보다 1인 출장 평가 건수를 늘린 결과임 - 신규 수급자와 정신신경계 질환자 평가를 위한 활동능력평가 출장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출장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존재,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들의 수급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 처리율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 등을 통해 평가자의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5	긴급복지 지원 예산 효율적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긴급복지(1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사업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초의료급여 사업비에서 238억 7,800만원을 전용받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148억 1,700만원을 불용하여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전용 받은 238억 7,800만원 중 62%가 불용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지역 간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숙인 등 복지지원(19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4년 6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노숙인 관련 조례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 14개 시·군·구에 불과함 - 지방정부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 6개 시·도(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는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거리 노숙인에 대한 필수물품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 지원이 어려움 - 향후 거점시설 확대 설치하는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부터 관련 사업 예산 폐지로 직접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보호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노숙인 등 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면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아동보호전담요 원의 채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원 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행률은 2021년 87.1%, 2022년 85.1%, 2023년 81.8%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부진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715명 중, 2023년 12월 기준 597명만 채용되어(83.5%) 채용률만큼의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업무 부담 편중을 관리하여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거나,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률 제고를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시도별 전담요원 1인당 담당 아동수 적정 수준 관리 등 개선할 것		
18	예산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집행계획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약 44억 3,100만원 중 약 5억 8,600만원(13%)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월된 5억 8,600만원 중 약 5,900만원 수준인 직원 채용 업무위탁 계약 외 ① 원내 시스템 기능개선 및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 사업(4억 6,000만원), ② 기획재정부 고객 만족도 조사(3,300만원), ③ 청렴 홍보 콘텐츠 및 저작물 제작(1,900만원)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1,300만원) 계약은 모두 연말 (11월 및 12월)에 계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말 계약체결로 인한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계약 해지 관련 원만한 후속 처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과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개통을 강행하여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한 사건임 - 1·2차 개통 이후 발생한 전산 오류가 지속되어 당초 2022년 10월 및 2022년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3차·4차 개통이 지연되었고, LG CNS 컨소시엄 측은 3차 및 4차 개통을 완료하지 않고 수익성을 사유로 사업 철수를 결정, 조달청은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선금 등의 반환 요구 및 처분 취소소송 등이 진행중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약 해지 관련 대금 반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등 후속 처리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추궁 및 관리감독 방안과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마련할 것		
20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과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개통을 강행하여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한 사건임 ○ 차세대 시스템 잔여과업은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개별시스템 통합 등 3차 개통, 통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4차 개통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오지급된 사례 파악 및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의 잔여 과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조속한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시스템 통합 지연에 따라 사업비 실행행률이 저조함 -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당초 2022년 11월로 계획했으나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기 위 해 2023년 2월 실시하였고, 이후 수요조사를 2회(2023년 5~6월) 추가하여 당초보다 7 개월가량 늦게 사업을 착수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개별시스템 17개를 1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현재 3개 개별시스템만 통합 구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 미 통합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통합시스템 개통 일정은 미정인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총사업비 협의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과업 도출 등을 조속히 추진 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22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34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7년 이후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청년 고독사는 6.5%에 달함 - 청년 고독사의 주원인은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고립, 구직 문제 등이 있음 ○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을 복지대상자로 편입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함 - 청년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수시로 취약 계층의 상태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관리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면밀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6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는 2017~2022년 5년간 연평균 15,549건인데, 2023년 17만 1,288건으로 폭증하였음 ○ 현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으므로,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 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512.6만명에서 2024년 656.7만명으로 7년간 약 28% 증가하였고,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7.3%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동 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9.2조원에서 20.2조원으로 증가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실효성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기초연금 채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지급 등으로부터 27억 3,800만원이 이용(증)되어 본예산(5억 100만원)보다 집행액(22억 2,200만원)이 4배 이상 많게 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증액이 부적절하므로 주의할 것		
26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의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가 2010년 이후 매년 100억원으로 동결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27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문성 높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2023년 6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자 대비 퇴직자 비중도 높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운용직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 활용 기준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기금관리운영비(7376-2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회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을 활용하여 회의시설 임차료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수립할 것		
29	해외 파견종료 인력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종료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해외 파견종료 인력의 이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파견인력의 이탈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여 해외 파견인력의 이탈률을 낮출 것		
30	해외사무소 정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해외 대체 투자의 위탁수수료가 2022년 기준 1조 8,137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 ○ 그런데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의 기초 인프라인 해외사무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최근 6년간 해외사무소 현원이 정원보다 20% 이상 부족하고, 런던사무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원을 0명으로 조정하였음(2023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해외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급여지급(7631-401)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계획액(당초)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22년 111.1%, 2023년 107.8%로 최근 2년 사이 오차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과소추계로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재정 총 규모가 과소추계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목표로 할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계획액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국가재정 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과소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2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예산현액은 200억 7,600만원 중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80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실집행은 17억 4,200만원으로 6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8.7%). - 보건복지부는 ‘현장의견수렴 진행 및 공모 절차’ 등으로 선정이 지연되고, ‘지방비 매칭’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청년 맞춤형 홍보와 인식 개선 등 홍보 강화 및 사업 수요 등의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취약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사업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사업계획 발표는 3개월, 사업 추진은 4개월 가량 지연되어 추진됨 ○ 이에 따라 집행액 77억 9,300만원 중 15억 7,500만원을 실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8.5%로 매우 저조하고, 8개 시도에서 실집행률이 20% 이하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집행가능한 예산의 교부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사업홍보의 확대, 이용자 발굴 및 모집 다양화 방안을 찾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며, 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장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 확대, 특화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가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34	사업 기준 준수 여부 및 제기된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 등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기준인 60% 투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펀드 투자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0월까지 145억원 중 87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2024년 6월 기준 투자된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이 주목적 투자 대상이고, 투자 금액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기기·기술·장비 개발 관련 기업 투자는 무방하나, 서비스 직접 제공 기업에 투자하여 서비스 공공성을 약화하고 기존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과 사업 종료 시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펀드 운용계획 조정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책펀드의 출자율보다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낮아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정책펀드의 출자율이 69%(당초 계획은 72%)로서 타 펀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약정총액의 60%에 불과하여 실제 정부의 재원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투자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책펀드의 출자율을 하향하거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정책펀드가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6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해소 및 실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예산현액 대비 4억원~9억원 사이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3년 12월 말 기준 대체인력 정원(274명) 대비 13.5%인 37명이 결원 상태인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 기간제 근로계약 및 원거리 출·퇴근 등 열악한 처우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대체인력 지원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50~70%대에 머무르고 있고, 2023년 실적은 전년도(56.9%)에 비해 더 낮아진 것(53.4%)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 채용률 제고를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촉진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부적절한 예산 전용의 시정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공공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의 출장비용으로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출장은 사회보장서비스 민영화라는 비판이 있는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전략회의 이후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일, 스웨덴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 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목적과 배치되는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 할 것		
38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례관리서비스 참여 아동 수는 최근 4년간 88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8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고, 1인당 평균 이용 건수는 2023년의 경우 38.9회로 전년의 35.2회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목표(50회)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사업시행주체인 지방 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추이도 최근 4년간 7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참여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저립지원전담인 력 처우 개선,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및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내 미집행 문제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상시적으로 미달 상태이고 퇴직자도 정원의 28%에 이르는바, 인건비가 낮아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채용 인력의 이·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지자체별 실행내역은 예산액 76억 3,500만원 중 불용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사례관리실적은 2,000건을 초과하여 2,477건이었음에도 불용이 상당한바, 이는 보호종료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연간 한도(480만원) 내에서 보호종료아동별로 자립에 필요한 사례관리 횟수가 달라 실제 집행액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사례관리를 1회만 지원받아도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급여업무프로그램에 의료비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음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시스템 구축이 11월말에야 완료되어 예산액 중 시스템 개발비용만 집행되고 의료비 지원분 등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호종료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례관리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례관리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내 미집행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학대피해아동쉽 터 설치 목표 재조정 및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쉽터 설치를 2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2023년 36개소의 쉽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말 신규설치 쉽터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10개소는 이월 예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설치는 9개소에 불과하는 등 실효행률이 36.2%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쉽터 설치 목표를 재조정하고, 쉽터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지자체의 쉽터 신규 설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및 계좌 중도 해지에 따른 미수납금의 환수에 대한 징수결정 방식 시정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 87,847명 중 63,200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대상 아동 대비 가입 아동수 비율이 75.9%로 연례적으로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에 따라 환수금은 1억 6,8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3,666만원만이 징수결정되어 환수되었음 ○ 계좌 가입률이 2020년 89.6%에서 2023년 71.9%로 하락하고 저축률도 2022년 대비 2%p 하락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아동발달지원계좌 미인출금액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만기 후 미인출금액에 적용되는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정부지원 매칭금은 환수해야 하는바,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 현황은 전체대상 확대에 따라 2020년 83명에서 2023년 14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 제고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률, 적립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환수 시 현재와 같이 환수가 능금액만을 징수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가입대상 및 저축률을 적정 규모로 산출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 확대에 따라 가입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인출 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주의할 것 ○ 보건복지부는 해당 계좌의 금리구조 개선을 통해 만기 후 미인출 아동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아동보호전문기 관 확충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으로, 2023년말 기준 전국에 9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신규 14개소를 더한 9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85개소만 설치되었고, 2023년도에도 설치 목표 105개소 대비 92개소만 설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규 설치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액도 불용되어 예산액의 87.59%만 집행된 바, 낮은 설치단가(6억원)와 위탁법인 및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신규설치 지연의 주 원인인 낮은 설치 단가를 현실화하여 설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43	첫만남이용권의 정책효과를 반영할 성과지표 마련 및 장기영향 조사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첫만남이용권 신청률(당해연도 신청자수/당해연도 첫만남이용권 수급 대상자)’을 두고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는 단기적인 정책의 인지도와 수급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표 및 정책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도입 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예정자·결혼 직후의 부부에게 이 제도가 임신 및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등 고려한 면밀한 추계 필요 및 지급연령 확대·지급액 인상 등 적극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수당 지급(2539-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정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활용하여 총 249만 8,776명을 지급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내출생 아동만 추계하여 편성하고 해외출생 및 난민 아동, 특별기여자 등을 지급 대상에 반영하지 않음 ○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 현금성 지원사업은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에 입학하면 지원이 중단되어 정부 지원과 실제 양육 비용 지출 간 간극이 존재하며, 심각한 저출생 상황임에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6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 8개국, 18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가 18개국으로, 8세 미만이 기준인 국가는 한국뿐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예산 편성 시 해외출생아, 난민, 특별기여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아동 수 변동 현황을 통한 수급 비율 추이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면밀히 추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45	부모급여 지급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14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부모급여를 현금과 바우처 혼합 지급방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시설 입·퇴소나 부모급여로 지출할 수 있는 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를 변경할 경우 유형별 서비스의 세부 이용 절차가 상이하여 별도 신청이나 비용 산정 방식의 차이 등을 유발하는바, 부모급여 지급 누락이나 오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활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바우처 지급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급여 실태조사 및 지급 만족도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1338-31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가 2023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자율편성 한도에서 지역 수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물량 및 소요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된 후, 설치 계획이 전년 대비 53.7%(450개소→208개소) 감소되었고, 실제 설치 개소 측면에서도 2023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이며, 설치비 지원의 실효행률도 33~52%로 저조한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돌봄 수요에 상응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실효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47	난임·우울증상 담센터 설치 및 인력확충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상담서비스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상담 예약 신청 후 일반상담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가 2023년 기준 중앙센터는 57일이고, 권역센터는 대기없음에서 21일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인건비 보조비목의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권역센터의 경우 26%에 지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대기일수 개선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확충하고 각 센터의 인력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 및 예산 집행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25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부 혹은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21년 이후 실집행률이 매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혜율도 높지 않음. 또한, 동 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 인건비 단가가 2017년 공공의료기관 간호사(30대) 월평균 임금(2,716천원) 기준 반영 이후 동결되어 보건소 인력 채용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실집행률과 수혜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9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국민연금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이질적인 국민연금기금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 대상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50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상담서비스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지정된 기관(5개) 중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2곳에 불과하여 노후준비상담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중 상담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전용재원으로서 의 역할 지양 및 노인일자리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 등 질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여러 사업의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본예산</th> <th>추경(A)</th> <th>이·전용 등</th> <th>예산현액(B)</th> <th>집행액(C)</th> <th>실집행액</th> </tr> </thead> <tbody> <tr> <td>2020</td> <td>1,201,501</td> <td>1,329,649</td> <td>△30,000</td> <td>1,299,649</td> <td>1,299.565</td> <td>1,151,750</td> </tr> <tr> <td>2021</td> <td>1,315,156</td> <td>1,330,679</td> <td>—</td> <td>1,330,679</td> <td>1,330.633</td> <td>1,284,907</td> </tr> <tr> <td>2022</td> <td>1,442,195</td> <td>1,442,195</td> <td>△4,041</td> <td>1,438,154</td> <td>1,438.070</td> <td>1,410,722</td> </tr> <tr> <td>2023</td> <td>1,540,016</td> <td>1,540,016</td> <td>△3,700</td> <td>1,536,316</td> <td>1,536.278</td> <td>1,488,798</td> </tr> </tbody> </table> ○ 노인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은 2020년 10.5% 대비 2023년 11.1%로 증가하였으며, 안전사고는 2023년 총 3,086건으로 전년 대비 86.1% 증가함 ○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보수 단가는 시간당 9,66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사업기간은 11개월임 ○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지역별 대기자 편차가 있으며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음							연도	본예산	추경(A)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2020	1,201,501	1,329,649	△30,000	1,299,649	1,299.565	1,151,750	2021	1,315,156	1,330,679	—	1,330,679	1,330.633	1,284,907	2022	1,442,195	1,442,195	△4,041	1,438,154	1,438.070	1,410,722	2023	1,540,016	1,540,016	△3,700	1,536,316	1,536.278	1,488,798
		연도	본예산	추경(A)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2020	1,201,501	1,329,649	△30,000	1,299,649	1,299.565	1,151,750																																						
2021	1,315,156	1,330,679	—	1,330,679	1,330.633	1,284,907																																						
2022	1,442,195	1,442,195	△4,041	1,438,154	1,438.070	1,410,722																																						
2023	1,540,016	1,540,016	△3,700	1,536,316	1,536.278	1,488,798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용재원으로 역할은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것 ○ 보건복지부는 중도포기율, 안전사고 발생추이·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체계적인 안전대책, 노인활동역량 지표 등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할 것 ○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하여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보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고령친화산업 예산 재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령친화산업육성(2142-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세계적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2024년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내시장규모: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 예상 - 세계시장규모: 2025년 1조 217억 달러(1,387조 4,686억원) 예상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53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중 치매예방사업 전액조정(△) 문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옥상·외부 등 누수관련 방수공사 및 실내외 인테리어를 이유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31일 계약하여 12월 6일 준공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재원 부족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조정함 ○ 치매환자 증가 등 치매예방의 긴요성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2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청사 공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액을 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시정요구사항	○ 대한노인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조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절차 간소화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실집행액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원단가 인상으로 48억 1,500만원이 전용되어 전액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 기준으로 전용액보다 많은 59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지원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절차 간소화, 인력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전용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55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사시설설치(2140-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사시설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81억 5,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55억 8,900만원(실집행률 73.9%)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실집행률: 2021회계연도 39.9% / 2022회계연도 67.3% ○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적 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장사시설설치’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확보 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연내 집행가능성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0~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행행률은 20.4%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자재비 등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과다 발생 및 신축부지 매입 비용 과다 발생, 시설 재정 악화 등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중도 포기시설이 다수 발생함 ○ ‘환기시설 설치’, ‘CCTV 설치’ 내역사업의 실행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 및 설계, 공사가 연례적으로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건축 단가 및 기준면적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토대로 예산편성 및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것 ○ 보건복지부는 환기시설·CCTV 설치 등 실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		
57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서비스 대상 238,806가구(노인 227,328가구, 장애인 11,478가구), 응급관리요원 671명 배치로 목표(30만 가구, 696명)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356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부산·전북 등 9개 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 등으로 이직율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 근무여건 개선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 구축 (22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 그러나 경도인지장애진단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 1명 이상)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5.1%인 90개소에 불과한바, 근무 여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과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내역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충원 확대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 설치)’ 내역사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59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 예산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5년간 노인실명예방수술비와 노인무릎수술비 지원건수는 신청건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노인실명예방수술비는 8월, 노인무릎수술비는 5월에 지원이 마감됨 ○ 2024년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예산(40억 8,200만원)은 전년(32억 9,300만원) 대비 24% 증액되었으나,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예산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추계·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노인장기요양보 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부당청구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884건, 환수결정된 부당청구액은 3,414억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의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61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및 미지급금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누적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한 255억 5,2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액 286억 2,400만원 대비 약 89%에 달하는 금액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수요 파악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고, 미지급금 해 소 예산도 편성할 것		
62	예산조정을 통한 연도 말 정책연구용역 계약 후 전액 이월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을 연말에 예산 전용과 세목조정 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당초 정책연구비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동 내역사업 내 일반연구비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총 9,000만원을 마련한 후, 연도 말(2023. 11. 28.)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조정을 통한 연도 말 정책연구용역 계약 후 전액 이월한 것은 예산지 침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의 예산조정 후 집행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내역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은 지난 5년간 1백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매년 불용하여 왔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0~2023년 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실적은 2020년 81.6%에서 2023년에는 80.4%로 감소하는 추세임																																	
			<table><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3목표치 산출근거</th></tr><tr><td rowspan="2">활동지원급여 이용률(%)</td><td>목표</td><td>83.9</td><td>82.6</td><td>81.7</td><td>81.7</td><td>81.8</td><td rowspan="2">최근 3년간 평균 급여 이용률 설정</td></tr><tr><td>실적</td><td>81.6</td><td>81.3</td><td>80.3</td><td>80.4</td><td>-</td></tr><tr><td></td><td>달성도</td><td>97.3</td><td>98.4</td><td>98.4</td><td>98.4</td><td>-</td><td></td></tr></table>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목표	83.9	82.6	81.7	81.7	81.8	최근 3년간 평균 급여 이용률 설정	실적	81.6	81.3	80.3	80.4	-		달성도	97.3	98.4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목표	83.9	82.6	81.7	81.7	81.8	최근 3년간 평균 급여 이용률 설정																													
	실적	81.6	81.3	80.3	80.4	-																														
	달성도	97.3	98.4	98.4	98.4	-																														
		시정요구사항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기 미용자 조사에 따르면 미이용 사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3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활동지원사 부족이 가장 높았음. 또한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 비율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0.7명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미이용 사유 파악,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																																	
65	활동지원사 인력 확대 및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활동지원사는 직접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 수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4년 1월 기준, 시·도별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사 비율은 0.7명으로 1:1 매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지적사항	- 이러한 원인으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낮은 처우가 지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중증장애인 별도 수당 등의 지급을 활동지원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인력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 및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 전문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과 활동지원사가 있음 -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은 활동지원급여 구간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 직원이 종합조사 근무경력이 없으며 업무 배치인력 순환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2023년 기준, 전체 활동지원사(112,750명) 중 여성이 87.6%, 50~70대는 79.22%로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관련 교육강화, 처우개선 등을 통해 활동지원 인력과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포기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로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국고보조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최초 사업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4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5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에서 발생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사업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독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의 평균 이용률은 70.7%이며,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중 7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는 평균 이용률 55.6%,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8개로 지역별 서비스 이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2023년 기준 40-49세는 3.0%, 50-59세는 2.1%, 60-69세는 0.7%로 매우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1인당 실제 평균 이용시간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6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실집행률은 각각 79.4%, 70.9%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2021-2023년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주간활동서비스 63.4%, 방과후활동서비스 47.1%) - 2021~2023년 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실적은 목표 대비 63.4%와 47.1%에 그침(2023년은 89.6%와 66.5%) - 또한 발달장애인 수 증가에도 이용자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수준에서의 집행 부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원인파악과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강화체계 구축을 하고, 제공기관 평가, 연령별 사업 유인책, 사업 홍보, 국고보조율 조정, 활동지원급여 차감 축소, 급여량 증대, 65세 이상 이용자 제한 폐지, 사업 집행현황을 고려한 추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업비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바, 장애 연령별 사업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모의적용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부여되는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20%를 일상생활 등 6개 영역에 지출하거나, 특수자격 인력 이용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됨 - 활동지원 급여 수준(서비스 제공 시간)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하며, 중도포기자도 발생함(2023년 사업 참여자 123명 중 34명 중도 포기) - 참여자 중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이용이라는 개인예산제도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예산제에 포함시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		
71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지연 우려가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보조금액의 약 35.2%(16억 2,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액의 약 37.2%(8억 7,600만원)가 이월되었음 ○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만족도, 소규모거주시설 비율,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증가율로 동 사업성과의 확인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집행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안도 그 구성요소(정책반영도+장애인삶 만족도)를 살펴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편향성이 큼 <table><tr><td rowspan="2">현 행</td><td>성과지표</td><td>측정산식</td><td rowspan="2">⇒</td><td rowspan="2">개 선 안</td><td>성과지표</td><td>측정산식</td></tr><tr><td>정책연구 활동실적</td><td>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td><td>장애인 정책지원</td><td>정책반영도 +장애인삶 만족도</td></tr></table>						현 행	성과지표	측정산식	⇒	개 선 안	성과지표	측정산식	정책연구 활동실적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	장애인 정책지원	정책반영도 +장애인삶 만족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현 행	성과지표	측정산식	⇒	개 선 안				성과지표	측정산식										
정책연구 활동실적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		장애인 정책지원	정책반영도 +장애인삶 만족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업무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을 새롭게 모색할 것																				
73	장애인단체 보조금 형평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단체(1538-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중앙지원센터는 2008년 운영 개시 이후, 2016년 1회 2,000만원의 증액이 있어 2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의 경우는 2023년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5억원을 지원 받고 있음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각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유사기능의 편의센터에 모두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4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400명의 장애인이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03명 참여에 불과하여, 2023회계연도 교부액(45억8,500만) 대비 실집행률은 37.4%(실집행액 17억1,400만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설 퇴소 이후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실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할 것		
75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참여 장애인을 위해 자립 전부터 개별전환지원계획 수립, 거주시설 퇴소 및 이주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자립 이후에도 주택입주,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임 ○ 그런데 사업 실시 이후, 지난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였으며(퇴직률 25%),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8.7개월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이들의 급여수준을 유사돌봄인력(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실행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두 내역사업은 모두 실행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함 -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는 실행행률이 3.2%,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실행행률이 47.3%에 불과하여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워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실행행률을 개선하고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77	기타민간이자수 입 과목 편성 및 징수결정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민간전대차관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융자원금 및 이자의 납입시 융자원금 및 이자잔액에 대한 이자(연 2%) 및 상환기한 도과시의 연체이자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해당 세입 예산과목인 기타민간이자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을 실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을 편성하고 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및 이자수입비목의 상환기한 도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철저히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전공의등 육성 지원사업의 필수의료인력 육성 기여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임 - 2023년 전반기 모집 기준 단기연수 지원대상 총 12과목 중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4과목에 불과하고, 술기교육 지원 대상과목의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은 25.5~77.5%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을 고려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79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성과 달성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임상교수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의정갈등으로 인하여 전공의 확보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 - 2023년말 기준 공공임상교수 모집예정인원 150명 중 28명 모집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동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확보 전략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 지원을 받은 간호대학들이 시뮬레이터 등 실습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침대옆 탁자, 환자감시장치, 전자칠판, 데스크탑 등 시뮬레이터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발생함 ○ 동 사업을 통한 취득 장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간호대학에 공통 적용되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년도 이후 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에 대하여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서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물품 구입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취득 장비의 보유·사용·관리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공동활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1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4333-301)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적사항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임차료 예산을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으로 전용하고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내역변경하는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은 2023년부터 민간보조사업(320-01)에서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비목 전환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르면 한림원의 각 사업은 국가사무를 위탁하는 형태가 아닌 한림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사업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 및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것(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성과에 입각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것(제도개선)		
82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1년 71.8%, 2022년 32.1%, 2023년 66.4%로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2023년은 전년 대비 예산액을 20%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사업 1년 차인 2021년보다 실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설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 집행 독려와 조기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집행을 제고 및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지원대상 및 개소당 CCTV 설치비용 지원단가의 과다 편성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였음 - 실제 예산 지원기관은 1,602개소로서 지원 대상기관(2,091개소) 대비 76.6%, 개소당 실제 지원단가(1.1백만원)는 예산 편성시(1.8백만원) 61% 수준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 예산의 지원대상 및 단가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84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2740-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업 추진과정 중 공모-재공모 절차 진행, 추가적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작업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보조금 예산 교부가 연도말(11월)에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주체에 교부된 예산 40억원 중 15억 3,500만원(38.4%)만 실집행되어 관련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 집행점검을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5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2740-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실집행률이 25.2% 수준에 불과함 ○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공공전문진료센터 신규 지정 공고 및 선정 절차 이후 기능강화 사업 공모가 7월부터 진행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각 수행기관별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현액 36억 5,500만원 중 53.5%인 19억 5,600만원만 실집행됨 ※ 실집행액은 '24.3월 기준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확인된 금액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차년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6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개선 및 지역의사제 등과 연계 추진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예산 편성상 의대생 및 의전원생 선발 목표 인원은 20명이나,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실제 지원을 받은 의대생 및 의전원생의 비율은 평균 52% 수준으로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 간호대생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최근 3년간 평균 3.8배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실적 및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사제 등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7	보조금 분할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275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내차입금상환과 복리후생비를 경상경비로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분할지출한바 있는데, 이처럼 내역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각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의 분할지출 등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8	대전의료원 및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부실한 집행 예방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4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대전의료원 설립 지원’ 및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지원’ 내역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취약지역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임 ○ 2023회계연도에 각 의료원 설립 지원을 위하여 교부한 설계비(대전의료원 5억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12억원)가 모두 이월되는 등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대전의료원과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의 차질 없는 지방의료원 기능 수행을 위하여 건립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암생존자통합지 지센터 제공 서비스의 효과와 질 제고 및 소아청소년암생 존자통합지지사 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암관리(275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암생존자지지사업 지원사업의 경우 각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별 수행 프로그램의 종류에 비하여 전담인력이 적고, 대부분의 센터에서 전담인력을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수가 최대 6.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 대구경북권역센터 - 전담인력 3명, 참여인원 1,617명(전담인력 1인당 평균 539명 담당) - 울산권역센터 - 전담인력 3명, 참여인원 244명(전담인력 1인당 평균 81.3명 담당) ○ 이와 같은 운영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균등성,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담인력 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서비스 질의 제고 방안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할 것		
90	응급환자 미수금 상환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28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반동안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2만 9,987건, 지급액은 407억 5,800만원이나, 해당 기간 상환 실적은 1만 6,440건, 54억 9,300만원으로, 1만 5,451건에 해당하는 189억 400만원이 결손 처리됨 ○ 이는 해당 업무 수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상환자의 상환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탓으로, 효율적인 상환업무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 관련 상환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1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안정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내역사업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병원 응급실에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점병원이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간호사 파견 요청과 실제 파견 내역을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 수요 대비 적은 수의 인력을 파견해 온 바,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의 경우, 27개 시·군, 31개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63명 파견 요청에 대해 17개 응급의료기관에 28명을 파견했고, 이는 요청 인원의 44%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후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92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내역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원격협진을 위하여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어 사업비의 40~60% 이상에 달하는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3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의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32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0년 운영 시작 이후 운영 중단 및 이용률(시설 전체면적 대비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시설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이용율이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이 많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4	2024년 사업종료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3237-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8-2024년 6년의 사업기간동안 총 304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의 주요 목표가 현대의학을 응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실증적 제품 개발에 목적이 있음에도 실제 제품 출시 실적은 총 2건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추진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2024년에 종료되는 동 사업의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		
95	수요에 기반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3237-308)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신규사업임에도 2억 2,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15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으나 13과제만 선정되는 등 사전준비과정에서 연구지원분야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준비과정에서 연구지원 분야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6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정비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국고지원율은 14%를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며, 국고지원금액 계상 시 예상수입액이 과소계상되어 실제지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의 교부를 과도하게 지연하여 건강보험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무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9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2023년 지원목표 인원 22,216명 중 실제 상병수당을 지원받은 인원은 5,911명(26.6%), 2단계 시범사업은 4,818명 중 939명(19.4%)에 그치는 등 지급실적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한정 한 점, 65세 이상 고려층 배제, 낮은 보장수준, 인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전체 의료기관 중 16.5%, 2단계 시범사업은 15.7%만 등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 확대, 보장수준 제고, 고용유지, 접근성 제고, 인센티브 마련, 인지도 개선 등 본사업에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8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연구방법론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험정책관리사업(4931-301)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으로 추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및 전망 방법이 비공개되어 있는데, 재정전망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 재정전망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전망방법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을 공개할 것		
99	건강보험재정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보험재정	주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적사항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예산으로 자체예산사업인 ‘자격부과사업’, ‘보험급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보화사업’, ‘행정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지출’의 7개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 7개 ‘사업’의 세부단위인 20개 ‘단위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예산액의 10% 이상으로 높은 사업이 8건에 달함 ○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건강보험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재정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총지출 및 복지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의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인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0	연례적인 초과집행 관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보험재정, 장기요양보험재정	제도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으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조치 없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집행을 근거가 미흡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에 수립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이 예상될 때에는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 절차의 번거로움을 우회하기 위하여 초과집행이라는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과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예산 변경 절차를 준수할 것		
10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일관성 유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4931-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예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수입의 15%를 편성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징금 세입예산액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과징금 예상수입규모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이 일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징금 세입예산액의 15%를 충족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2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및 관련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보험재정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적사항	○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고시를 2023년 9월에 개정할 바, 개정 이전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제도의 미이행으로 32억 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및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03	연구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연구 과제의 적시 활용에 기여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3332-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18개 연구 과제에 대해 용역이 발주되었으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보상방안 연구’,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마련 연구’,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 연구’, ‘국가건강검진 내 조기 정신증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등 5개 과제는 계약 체결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연구 결과물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04	효과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한 충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비급여진료비 지원은 전년도 진료 환자 수 기준으로 권역센터별로 지원금액을 교부하고, 이후 환자 진료 실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며, 국고보조금 예산 소진 후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바, 2023년도의 경우 경기 1억 4,159만원, 충남 9,780만원 등의 비급여진료비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였고, 충남의 경우는 9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차년도로 진료일정 등이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진료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5	권역별 장애인가강진료 센터의 설치 시부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편의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한 것은 세종권역센터(6억 5,000만원)의 설치 지연 때문으로, 장애인 환자의 이용 편의 및 진료 효율 향상을 위해 설계 및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사 지연이 초래된 데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시부터 장애인환자의 진료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06	의료급여수급권 자 대상 수검률·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자는 67만 3,000명이나 수검자는 23만 6,000명으로 수검률이 35.1%에 불과하였고, 최근 3년간 영유아발달 정밀검사 대상자의 지원율이 연례적으로 17%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율에서도 경기 지역은 25%로 가장 높고 울산 지역은 11.5%로 가장 낮은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임 ○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 비용이 1회성 검사비에 그치는 한계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대기 등 접근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지역적 지원을 편차 시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 지원이 1회성 검사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7	금연상담인력의 안정적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금연상담전화의 경우 이직률이 2022년 26.7%에서 2023년 31.9%로 증가하였고,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64.7%에 이르는 등 인력 운영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하여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8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 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동 사업의 실효행률은 2021년 49.2%, 2022년 47.2%, 2023년 69.4%로 다소 개선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실효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안내 등 사업 참여율 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9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 유도 제고 및 지역별 성공률 편차 해소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12월 기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1만 1,860명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에 비하여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4주 평균 금연성공률과 6개월 평균 성공률은 큰 변동이 없이 각각 70.6% 및 32.6% 수준을 보이고 있고, 보건소별 성공률 편차도 2023 년도의 경우 최상위 70.5%와 최하위 5.4% 등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참여 유도 및 이용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고, 보건소별 금연클리닉 성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상담 역량 편차 를 좁히기 위한 상담사의 주기적 교육·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0	금연캠프 사업의 연령대 편중 및 지역별 성공률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금연캠프 등록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치료형의 경우 50대, 60대가 65.7%,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59.2%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이 남성은 40대(36.6%)→50대(32.5%)→20대(30.6%)→60대(28.2%), 여성은 30대(6.8%)→50대(6.1%)→20대(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4주 금연 성공률이 79.0%에 비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2.8%에 불과함 ○ 4주 금연 성공률의 경우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별로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인바, 경기 남부·북부는 90%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강원도는 각각 55%, 64.6%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금연캠프에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6개월 금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금연성공률이 저조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기초로 성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계약 체결 시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3343-301)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하나의 계약을 통합 발주하거나 일반회계사업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재원을 별도의 계리를 통하여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체결한 일부 계약의 예] <table><thead><tr><th>계약명</th><th>계약액</th><th>구분</th><th>세부사업명</th></tr></thead><tbody><tr><td rowspan="2">2023년 방문 및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td><td rowspan="2">50,000천 원</td><td>회계</td><td>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td></tr><tr><td>기금</td><td>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td></tr><tr><td rowspan="2">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td><td rowspan="2">99,875천원</td><td>기금</td><td>음주폐해예방관리 (3340-300)</td></tr><tr><td>기금</td><td>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td></tr></tbody></table>					계약명	계약액	구분	세부사업명	2023년 방문 및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50,000천 원	회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	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	99,875천원	기금	음주폐해예방관리 (3340-3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	
		계약명	계약액	구분	세부사업명																			
		2023년 방문 및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50,000천 원	회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																							
2023년 음주폐해예방 홍보 운영	99,875천원	기금	음주폐해예방관리 (3340-300)																					
		기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3343-301)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 또는 회계와 기금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2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등 기능 보장사업 실적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보장 지원에 대한 2023년도 실행행위를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0% 수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9% 수준으로 그 실적이 상당히 낮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보장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3	전용을 통하여 본예산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원칙적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말인 2023년 11월 1일에 전용된 2억 9,300만원 및 내역변경된 민간경상보조비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심리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내에 그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할 것		
11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중독자 치료 예산액은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인 4억 1,000만원보다 더 많은 규모인 4억 7,400만원을 내역변경 및 전용으로 확보하여 집행하였는데, 마약류 투약사범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6,177명에서 2023년 10,899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치료 시설 확충 등 추가 재정 소요에 철저히 대비할 것 ○ 보건복지부는 향후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 치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5	마약류 중독재활치료비 미지급금 방지를 위한 예산대책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마약중독치료보호기관은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병동이 많았고, 실제 인천 참사랑병원은 외상치료비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증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치료비 미지급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6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전문인력 부족 및 낮은 예산 집행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문인력 부족 및 낮은 예산 집행률은 문제인바, 전담인력인 간호사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겸임인력으로서 적시에 응급환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고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적 평가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17	정신건강복지센 터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정신건강증진사업(3346-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종사자는 4,553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66.3%에 이르는 등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3.3년에 지나지 않음. 또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전국 평균 25.2명에 이룸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퇴직률도 증가하는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및 종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8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5년동안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 인력의 이직률은 31.2%('19)→20%('20)→13.3%('21)→25.5%('22)→17.5%('23)이며, 인력 채용 시 자살예방이라는 상담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필수 자격증 등 요구가 현재는 부재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채용 미달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바, 인력 충원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9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지역별 편차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유족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지역별 집행 상황에서도 대구, 세종과 같이 전액 집행된 지역이 있는 반면 충남(58%), 충북(67.4%), 강원(67.8%), 서울(85.1%)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유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지역별 집행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0	독립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12월 기준 12개소의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 중으로, 이 중 독립형 센터는 2개소, 부설형은 10개소이며,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두지 않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의 전담팀을 두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세종·충북·전북·전남·경남 등 5개 지역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독립형과 그 외 형태의 기관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자살예방센터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것		
121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 연례적 실적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의 수행기관 설치(확보)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설치 목표 62개소 대비 총 63개소를 설치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감소하여 2020년 78.4%, 2021년 87.5%, 2022년 87%, 2023년 83.2% 수준으로 매년 예산 편성 시 계획하였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8개 시·도(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자살시도자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은 당초 설치 목표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서비스 동의율 및 사례관리 서비스 수행률 등 관련 성과가 일부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2	연구중심병원 성과제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구중심병원육성(R&D)(30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연구·산업화 수입 비중, 연구개발 자립도 등)가 저조하거나 정제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3	연구중심병원육 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기획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구중심병원육성(R&D)(30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부터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연구중심병원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2기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 ‘2기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성과관리 등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기획에 주의할 것		
124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중대한 협약변경, 연구개발과정에서 불량과 거짓, 완전자본잠식 등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된 일부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 대부분이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바, 연구과제 선정 과정 및 부처별 사업단 운영 전반 등을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범부처 사업의 부처별 사업단 운영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5	연구과제 중단 사유 점검 및 성과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4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 과제 중단 현황] (단위: 건)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신규 과제</th><th rowspan="2">중단 과제</th><th colspan="4">중단 사유</th><th rowspan="2">기타</th></tr><tr><th>연구자 요청인정</th><th colspan="3">단계평가 결과 중단</th></tr><tr><td></td><td></td><td></td><td></td><th>단계</th><th>중간</th><th>특별</th><td></td></tr><tr><td>2020년</td><td>754</td><td>7</td><td>6</td><td>-</td><td>1</td><td>-</td><td>-</td></tr><tr><td>2021년</td><td>447</td><td>6</td><td>4</td><td>-</td><td>2</td><td>-</td><td>-</td></tr><tr><td>2022년</td><td>671</td><td>15</td><td>8</td><td>1</td><td>-</td><td>2</td><td>4</td></tr><tr><td>2023년</td><td>743</td><td>17</td><td>8</td><td>-</td><td>-</td><td>9</td><td>-</td></tr></table>								구분	신규 과제	중단 과제	중단 사유				기타	연구자 요청인정	단계평가 결과 중단							단계	중간	특별		2020년	754	7	6	-	1	-	-	2021년	447	6	4	-	2	-	-	2022년	671	15	8	1	-	2	4	2023년	743	17	8	-	-	9	-
		구분	신규 과제	중단 과제	중단 사유									기타																																																
					연구자 요청인정	단계평가 결과 중단																																																								
				단계	중간	특별																																																								
2020년	754	7	6	-	1	-	-																																																							
2021년	447	6	4	-	2	-	-																																																							
2022년	671	15	8	1	-	2	4																																																							
2023년	743	17	8	-	-	9	-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중단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당초 기획한 연구 목표 및 성과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할 것																																																													
126	연구과제별 별도 사업단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별 연구과제에 대하여 별개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 운영비 중복 지원, 집행 시차 발생, 사업단 별도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별도 사업단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7	의사면허자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군 전문연구요원제 도 개선 및 국고보조를 조정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033-34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온 정책 방향이 지원체계 기반 정비 등 거시적인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의사과학자 진로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 의사면허자의 선호나 요구사항 등을 세심히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유인책’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사과학자 소속 대학(원)은 국고보조율(2:1)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대학(원)의 관심 및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의지나 연구역량과 무관하게 사업참여에 한계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국방부는 군 필수 의학계열 전문과목 지정 시기 및 내용 등이 사전 예고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8	계획적인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303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은 이·전용 감액된 후 다시 증액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 이·전용 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건수</td><td>14</td><td>32</td><td>39</td><td>23</td></tr><tr><td>증감액(총)</td><td>2,369</td><td>3,176</td><td>5,426</td><td>8,306</td></tr><tr><td>증감액(순)</td><td>△486</td><td>48</td><td>3,564</td><td>3,755</td></tr></table>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4	32	39	23	증감액(총)	2,369	3,176	5,426	8,306	증감액(순)	△486	48	3,564	3,755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4	32	39	23																					
증감액(총)	2,369	3,176	5,426	8,306																					
증감액(순)	△486	48	3,564	3,755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9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약산업 육성·지원(3039-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K-글로벌 백신 펀드는 당초 조성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투자대상이 제약·백신 이외에 의료기기·헬스케어·바이오 인공장기 등을 포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제약·백신 비중이 축소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펀드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백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130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3039-30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2호점 신규 개관을 위한 7억 6,400만원 전용(증)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단 전용을 주의할 것		
131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관리·운영(3033-5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인증 비율이 약 10.2%로, 특히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 성과가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사용인증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2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전체 의료기관 39,213개소 중 1,004개소(2.6%) 참여)로 나의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의 범위가 제한되어 서비스 개시 후 이용률 및 활용도가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133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개산급의 신속한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의 경우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재정의 결손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국고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개산급으로 지원된 의료기관의 전체 지원개소 대비 정산 개소수를 보면, 2024년도 6월 말 현재 477개소(변동없는 기관 포함)로 전체 지원 의료기관인 620개소 대비 77% 수준이며, 전체 지원금액 8조 6,582억원 대비 37.4%인 3조 2,407억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 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4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2023년 12월말 기준 위탁사업비 2억 1,000 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전부가 미집행됨 - 당초 편성 당시 계획 병상(1700개)보다 실제 수요(취소반영 755개)가 부족함 - 국고보조율이 50%로 2021~2023년 ‘병동형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국고보조율 (100%)에 비해 낮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의 실행가능성·재정부담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 업진행상황과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교부하 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5	국가감염병임상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관련 고시 정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의 비목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0년 1월부터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전신인 임상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앙감염병전 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8월 16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국가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 나, 2022년 1월 12일 제정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 로, 민간위탁사업비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아 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할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신고포상금 집행을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안전관리(1515-30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1231-301) 지방 청 감시 및 검사업무(5031-301)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식약처 소관 포상금(310-03목) 중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은 2023년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435만원(21.8%)이었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매년 700만원 중 50~60% 수준의 집행액을 보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도 집행률이 매년 10%대로 나타났음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과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만 안내 게시를 하였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경우 특정 2명의 신고인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포상금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홍보를 강화할 것		
2	과태료,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3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3%인 58억 3,300만원 으로, 이는 2020년 미수납액(35억 8,500만원) 대비 62.7% 증가한 수치임 ○ 2020년 및 2022년도 결산 심사 시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현재까지의 징수를 위한 대책 들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과 과징금 채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1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3년 4월 24일 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 고시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총한도액(향후 5년간 정부지급금: 427억 5,800만원) 등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2024년 8월 현재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현황을 보면, 제21대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만 개정·시행('24.7.24.)되었을 뿐, 관련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민간투자자로 진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5.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식약처장은 담배 종류에 따라 유해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종합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만으로는 금연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제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의 범위와 측정방식을 향후 식약처고시로 규정할 계획인데, 식약처에서 유해성분 측정방식으로 ISO 인텐스 방식을 규정할 경우 동일한 담배임에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타르, 니코틴의 함유량과 식약처가 공개하는 타르, 니코틴의 함유량이 달라지게 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성분 함유량 측정방식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		
5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 및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10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19년 12월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이 의무화(매년 7시간, 임명된 최초의 해는 21시간)된 이후, 매년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초과되고 있고, 2023년 경력자 대상 현장 실무분야 교육의 경우 회당 교육인원이 최대 111명(적정 교육인원 35명)에 달하는 등 지자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식품위생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1032-307)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3년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10개의 식품위생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8개의 동업자조합,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교육운영 및 회계관리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함. 이는 식약처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HACCP제도 활성화(1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3년 사후관리 평가 대상 HACCP 인증업체(12,765개소) 중 현장평가 실시업체는 6,841개소(53.6%)에 불과하였고, 평가 결과 부적합률이 약 10%에 달하였음 -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확대로 인증업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사후관리 전문인력(총 29명)으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20년 3월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현장평가 면제 대상업체 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관리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현장평가를 확대하는 등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중독 예방 및 관리(12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대상업소 대비 지정률은 2023년 기준 6.6%에 불과하고, 2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위생등급 재지정 신청률도 57.7%에 그치고 있어 재지정 유인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각 지자체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두 제도는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표지판 교부 등 지정에 따른 혜택도 유사하나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관련 가중치 부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1232-31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대상집단이 어린이로 한정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비교하여 업무의 다양성과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직원 운영기준은 등록되어 있는 ‘급식소 개수’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적용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조금에 차등을 둘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 및 지속적인 사업확대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1232-31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양적 지표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율’인데, 지원 급식소의 만족도 등 장기적으로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년차 팀원의 기본급은 약 196만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원에 미달하며, 맞춤형 식단 지원 등 여러 급식소를 관리하는 사업 특성상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원 급식소의 만족도 등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지표로 개선하며, 영양사 등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개선 및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회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	주의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원자를 선발하는 심사기준과 지원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선발 여부에 대한 환자들의 혼선을 초래함 ○ 해당 사업은 2023년에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중위소득 125%인 자에 대한 지원이 절반 수준(49.4%)을 차지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행상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일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여 환자들이 지원 가능성 및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사업대상의 과도한 확대에 인하여 저소득계층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12	예산 외 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이월액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회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032-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구매·공급한 뒤 회수대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회전자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3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한데(64.8%), 2024년부터는 회전자금 운용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예산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이월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 구입비를 세입세출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전자금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을 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재이월 고려한 예산편성 및 인과성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실행률은 44.9%로 저조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3억 3,2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향후 4년간 지속해서 재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2월 기준 총 14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해구제 급여대상에서 제외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시 재이월 등의 집행 상황을 반영하고,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인과성 인정 및 지급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지 검토할 것		
1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운용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부담금 적립금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부담금 운용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매년 부담금 지출액은 22억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신규 적립액은 50~55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적립금 증가가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담금 수입 측면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효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부담금 지출 측면에서 부담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피해구제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위한 QbD 도입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약품 품질고도화(2033-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사업 시행 10년이 경과하여 QbD 적용모델 개발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약업체의 QbD 도입률은 44.1%에 불과함 -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의 부재와 과도한 개발비용 등이 QbD 도입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무 전문가 양성, 비용부담 완화, 업계와의 소통, 스마트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등을 통해 QbD 도입률을 제고할 것		
16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0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신규 구축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VR기기 등을 활용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기구축된 플랫폼의 기술상 문제로 접속자 수와 사용실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지표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방식의 적절성 검토 및 기구축된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시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이용률을 집계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계획성 있는 전용과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031-301)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연도 중 예산액의 10%가 넘는 전용과 세목조정이 발생하였는데, 하나의 비목에서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등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의 비목에서 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18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단순 설문조사한 것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자의 인식도 제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19	세목조정 필요시 절차 준수 및 비목에 맞는 보조금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2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 관제시설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세목 조정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비를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예산집행 관련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개방형 시험실 사업운영의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개방형 시험실의 운영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향후 신규 업체의 진입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실 내부의 냉난방기 고장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시험실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정책 취지에 맞게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등 사업운영을 내실화할 것		
21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의 본사업 운영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3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은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분산 집행되었고, 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이상사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3년 한도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운영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22	기술료 징수 관리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R&D)(4031-303)	제도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적사항	○ 2023년에 종료된 동 연구사업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기준 누적 수납액이 1억 8,100만원에 불과하여 총 계약금액 대비 기술료 수납률이 12.8%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료된 연구사업의 기술료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질병관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조사·분석·평가 등 사업비의 일반연구비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조사·분석 등 사업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세부사업에서 ‘2023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통계 생산 및 분석’ 등 3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세부사업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아형별 실시간 유전자검출 검사법 개발 및 최적화’ 1건 등 6건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 결핵예방 세부사업에서 ‘유전자변이를 이용한 신속한 결핵 퀴놀론 감수성 확인’,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질관리(장기2차)’ 등 2건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기술, 평가, 조사, 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2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 이용 주의	관련사업명	[총괄] 일반회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도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39억 5,400만원 대비 62.7%인 87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4.0%인 47억 4,200만원을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시험연구인력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이용 재원으로 과다 사용한 내역사업도 감염병 관리기술개발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형질분석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시험연구인력지원 등 3개에 이르고 있고, 예산액의 30% 이상 50% 미만을 이용 재원으로 사용한 내역사업도 4개에 이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개별 R&D 사업의 시험연구인력 예산을 과다하게 이용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R&D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연구비로의 과다 전용 및 이월 주의	관련사업명	[총괄] 일반회계 -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시험연구비로 집행하고,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연구비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R&D 세부사업에서 분석 등 용역사업을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일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일반연구비의 이월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할 것		
4	미수납액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0년 55.9%에서 2023년 74.8%로 개선되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에는 코로나 19관련 대규모 보조사업 집행부진으로 집행잔액 반납금인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도 2022년 599억 7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1,906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4년 4월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793억 원, 2022년 5억 3,200만원, 2021년 3,500만원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에 대해 차질없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미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고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의 과다한 이·전용 재발방지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의 전액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전용(333억원)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 법률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이월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교부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것은 적정한 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향후 사업 수행시 집행가능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C형간염 시범사업 미지급금 예산편성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 당초 계획 대비 검사비용 단가 초과 등으로 11억 6,1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2023년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2020년 C형간염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1억 2,000만원을 조정하여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조속한 상환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목적외 사용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예방관리(6131-303)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예산 2억원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치 료비 부족분을 위해 3,100만원을 전용(△)하고, 5,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하 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1억 3,100만원 중, 동 내역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국립결핵 병원 장기비전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결핵병원 장기비전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결핵병원 관련 책임운영기관 특별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집행할 성격으로, 다부처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확대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검역 및 해외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과 관련하여 감염병 세균·바이러스 진단검 사와 병원체 변이특성 분석검사와 최근 3년 검사량을 보면 34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수도권과 경남권의 진단검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권역별 연평균 22,724 건의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등의 위협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충청권질병대응 센터 이전사업비 편성·집행 불일치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상 「건축법」상 대수선, 증축, 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선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산 비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바뀜 ○ 사업비 8억 1,200만원 중 7억 6,2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였다가 예산집행 단계에서 편성 시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비로 전액 전용하였고, 이 중 집행액은 2억 1,800만원에 그쳤고, 5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맞는 적정 비목을 편성하여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비 전용 후 다음연도 이월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을 전용(6.16.)하여 집행하였고, 2024년 해당하는 사업비는 연말(12.27.)에 전용하여 이월·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거나 다음 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연말에 전용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이월·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치료제구입비 과다 이·전용 주의 및 치료제 수급관리 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 치료제구입비 이·전용 재원으로 이용한 사업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예산액의 61.8%(2,821억 2,600만원)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예산액의 31.9%(57억 7,100만원)를, ‘형질분석연구(R&D)’ 사업은 예산액의 17.7%(3억 9,000만원)를 감액하여 이용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 먹는 치료제 도입량은 지난해 2분기 34.1만명분 대비 17.9만명분이고, 누적 비축량 역시 2023년 2분기 52.9만명분 대비 20.6만명분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먹는 치료제 확보가 매우 중요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 발생에 따른 것인 만큼, 이·전용이 아니라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치밀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12	유급휴가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반납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중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예산액 전액을 이·전용 감액하였음(예산액 1,215억 6,000만원 중 541억 6,000만원 이·전용 감액) ○ 질병관리청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체결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공식 종료되었으므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2,344억 9,000만원에 대한 정산·반납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고려함으로써 이·전용을 통한 과다한 감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질병관리청은 국고금에 대한 재이월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조치에 따른 적절한 금액만을 유보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 신속히 정산·반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장례지원비 재이월금 규모의 과다 책정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도 장례지원비 집행 잔액 재이월을 통한 예산확보 필요성에 따라 111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재이월한바, 재이월 산출 근거를 보면 2022년도에 불인정된 2,689명이 모두 재심사 요청 시 인용률 72%를 적용한 1,936명 중 재심사 신청(신청률 50% 가정) 인원 968명에 대해 재인용을 가정하고, 실지원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재이월액 111억 4,500만원 중 실집행액은 6,900만원이고, 추가 소요액은 20억 8,800만 원을 추계되고 있어 89억 8,7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재이월 소요액 추계 근거가 부정확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의 장사를 진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		
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축사업 추진의 정상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	주의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호남·충청·경북·경남·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중 호남권은 공모 후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고, 충청권·경북권은 병원 자체 계획 재검토 중, 경남권은 KDI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일괄 교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주의할 것(주의) ○ 질병관리청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 목적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성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보조율 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코로나19 변이 상황에 따른 백신 물량확보 및 객관적·과학적인 백신 수요 분석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주의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2,150억 7,800만원 규모인 2,146억 9,900만원을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 전용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6,587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기계약 물량 1,550만 회분의 공급일정을 조정하여 2023년 신규 백신으로 전환 도입하였음 ○ 2021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도입물량 2억 1,679만 회분 중 폐기량은 3,049만 회분으로 폐기율은 14.1%에 이르고, 24년 8월까지 폐기량은 6,197만회분으로 28.6%에 달함 ○ 폐기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 백신 온도 이탈, 백신 용기 파손, 사용기간 경과 등이 있는데, 약 99.2%가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할 것(주의) ○ 질병관리청은 객관적·과학적인 백신 수요 분석시스템 구축에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상반응 신고 및 보상심사 기각률과 인용률을 보면, 기각률(기각건수/심의건수)은 2021년 60.4%, 2022년 72.9%, 2023년 86.8%로 높은 반면, 인용률은 2021년 39.6%, 2022년 27.1%, 2023년 13.2%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금 예산 624억 8,800만원 중 46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에 불과하고, 보상금 지급 인원도 3,547명으로 계획인원 3만 7,578명 대비 9.4%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17	국회 예산심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6434-30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예방접종 홍보, 추진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연도 중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 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각각 7억원(당초 예산안 10억원)과 5억원(당초 예산안 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023년 1월 및 3월에 7억 9,200만원과 700만원의 세목조정 증액을 통해 집행함 ○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6532-300)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 ‘기후변화 관련 극한기후의 건강영향 연구’ 등 7건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이 중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활용성 강화방안 연구’는 2026년에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연구의 수행시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음 ○ ‘기후변화 관련 질병관리청 대응방안 중장기 계획’의 경우 하반기에 전용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민의 시급한 건강보호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용을 통한 신규 과제 수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연구용역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주할 필요가 있겠고, 전용을 통한 신규과제 발주는 지양할 필요가 있는 등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절성을 제고할 것		
19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관리용역비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생의료안전관리 운영(6631-302)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특히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은 연구용역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는 전산운영 관리 업무 경비로서 일반연구비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역할 구분 및 중복 지원의 지속적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66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 관리하는 3개의 출연사업 중 2개 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내 하위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평가관리비가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중복 지원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21	국립심뇌혈관센 터 설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기본계획 재수립, 총사업비 조정 등 변동 사항의 발생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국제백신연구소 (IVI) 운영비 30%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6632-31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IVI 유치신청 시 약속사항인 운영비 30% 지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적인 지원내용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달라지고 있는바, 2013년 12월 교육부와 IVI 간 양해각서 개정 시 'R&D 제외 운영비 30% 지원'이 'R&D 포함 운영비 30% 지원'으로 개정되었고,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와 IVI 간 양해각서 체결 시 'R&D 포함 운영비 30% 지원'에서 '프로젝트 보조 인건비와 외부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운영비 30% 지원'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최근 지원액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원인은 IVI의 우리나라 유치 조건이 운영비 30% 지원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향후 MOU 재체결 시(유효기간: 2022.5.13. ~ 2027.5.12., 5년간)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화하고 국제 신임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23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 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4-343)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현액 74억 7,200만원 중 74.6%인 55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5%인 14억 5,4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함 ○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은 1차부터 3차까지 20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3년 동 4차 사업 지연 사유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HPV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시험법 및 표준항체개발체계 구축, 백신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5건의 연구용역 등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적 사업관리를 통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운영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4-34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치료 산업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역할이 막중함 ○ 동 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당초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되었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건축이 아닌 재단의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는 달라진 것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센터의 참여 인력 확보 및 자체 수입방안을 마련할 것 ○ 질병관리청은 향후 재단의 예산 편성 추이와 집행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25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특별회계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4761-300)	주의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계획달성이 부진하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내성결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내성결핵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을 조속히 개선하여 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 안전을 강화하도록 할 것(주의) ○ 질병관리청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HIV/AIDS 진료비 미지급금 정산 철저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에이즈 및 성병예방(6135-304)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신규 감염인 발생 및 HIV/AIDS 치료제 발달로 인한 감염인의 생존기간 연장으로 지원대상자 수 및 치료 관리기간이 증가하여 진료비 누적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누적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2021년 3억 6,200만원, 2022년 1억 8,800만원, 2023년 5,800만원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HIV/AIDS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진료비 지원 시스템 정비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질병관리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과제 달성률이 미흡한바 사업 성과 개선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예방·관리에 노력할 것		
27	결핵관리 전담인력 이직률 축소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환자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전담인력 감소시 관리망 이탈 환자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파악을 위한 고용형태를 조사한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및 조사시점에 채용 중인 인력의 비율로 추정시 매년 27~67% 가량의 이직률 발생이 추정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전담간호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과 결핵관리 전담요원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적정한 두창백신 및 탄저백신 비축물량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6236-302)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4년 5월 현재 약 4,000만명분의 두창백신을 비축해 놓고 있으나 이 중 58% 가량 (2,324만명분)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임 ○ 현재 비축 중인 탄저백신은 1,000명분으로 필요한 최소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탄저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두창백신은 2세대 백신으로서 보다 안전한 두창으로 평가받는 3세대 백신으로 비축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탄저백신 비축계획을 설정하여 대비가 가능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도록 할 것		
29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12~17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남아 등에게도 확대하는 내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다수가 제21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 보장 서비스로 접종대상 백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조치 등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령화에 따른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9년부터 인센티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13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 현재 1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수요자 반응이 좋은 만큼 참여지역 확대가 필요하며, 전체 대상기관 대비 의원, 약국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참여지역의 확대 및 의원·약국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1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조사대상 확대 등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조사는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해 조사 ○ 표본가구 대체율*이 30%가 넘어 조사대상의 대표성의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함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거주환경이 유사한 가구로 교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및 표본대체율 관리를 통해 조사의 대표성 및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유지를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참여율 및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영양조사(6535-304)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은 매년 대상자의 30% 정도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는 매년 그 다음해 11월경 발표되어, 조사시점과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상당한 시간적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사결과의 발표도 앞당겨 당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의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4. 부대의견: 총 16건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미수립 중인 7개 법정계획을 2025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되, 타 법정계획과 중복되는 경우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전략 마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멸시효 완성 전 제기하도록 한다.
- 정부는 엘리엇 및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 신청에 따른 중재판정 불복 절차가 완료되어 후속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소관 부처의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이중청구, 환자의 회전문 입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연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필요한 예산을 2026회계연도부터는 현행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적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드러난 사업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향후 유사 사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및 처우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신규 사업의 무단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병상동원계획 내에서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의료기관의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피해 보상에 관한 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안을 국회 등과 논의하여 마련한다.

-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과 함께 비교·검토한다.
-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연도, 조사내용 등 제도설계를 재검토한다.